

2026/27

승강기기사, 승강기안전관리자  
**승강기 안전관리법**

**엠북 자격증**

**공부혁명!**  
**mbook.kr**

- ✦ **스마트폰 수험총서**
- ✦ **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**
- ✦ **최근 법령 신설, 개정 내용 반영**
- ✦ **1시간 17분 완성**

도서명 : 승강기 안전관리법

ISBN : 979-11-7393-276-2

발간일 : 2026-06-19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[by4782@gmail.com](mailto:by4782@gmail.com)

정가 : 8,500원



# 승강기 안전관리법

승강기법(이하 법)

## 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(p15)

제3장 부품 등의 안전인증(p33)

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(p71)

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(p106)

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(p114)

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(p120)

제8장 보칙(p123)

제9장 벌칙(p134~144)

## [약어]

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

공단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
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

시군구

법인등은 법인, 단제, 기관

안전부품은 승강기안전부품

정보망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

## [비고]

회색 **형광펜**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## 제1장 총칙

1~5조

### 1. 목적

- 승강기 제조/수입/설치, 안전인증/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
- 승강기 안전성 확보
-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/신체, 재산 보호

### 2. 정의

# 가. 승강기

1)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 
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, 화물을 승강장으로  
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 설비

## a) 엘리베이터

- 일정한 수직로나 경사로를 따라 위/아래로  
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사람, 화물을  
승강장으로 운송

## b) 에스컬레이터

- 일정한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/아래,  
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, 화물을  
승강장으로 운송

## c) 휠체어리프트

- 일정한 수직로나 경사로를 따라 위/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자를 승강장으로 운송

2) 다음은 제외

a) 궤도

b)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

c) 기계식주차장치

d)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 동력 사용 권양장치

e) 리프트

f) 주한외국공관,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, 국가간 협정 준수를 위해

# 장관이 인정하는 승강기

**나. 승강기부품(이하 부품)**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, 부분품, 부속품

**다. 제조**는 승강기/부품을 판매/대여,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/조립, 가공

**라. 설치**는 승강기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,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

- 다음 범위내 승강기 교체 포함

1) 엘리베이터, 휠체어리프트는 다음

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 모두 교체

- 균형추

- 기계대
- 완충기 지지대
- 주행안내 레일
- 주행안내 레일 부분품
- 출입문 문틀

2) 에스컬레이터는 다음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 
승강기 부품 모두 교체

- 골조 구조물
- 골조 구조물 부분품
- 승강장 보호수단

**마. 유지관리**는 설치검사 받은 승강기가  
설계에 따른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게 하는  
다음 안전관리 활동

- 주기적 점검
- 승강기/부품 수리
- 부품 교체
- 장관 고시 안전관리 활동

## 바. 승강기사업자

- 승강기/부품 제조업, 수입업 하기 위해 등록된 자
- 승강기 유지관리 업 하기 위해 등록 한 자
- 건설업 등록 한 자로서 승강기/삭도공사업 (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) 종사 자(이하 설치공사업자)

## 사. 관리주체

- 1) 승강기 소유자
- 2)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
- 3) 상기의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 부여받은 자

## 아. 기타

- 도급계약은 승강기 안전관리,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(하도급계약 포함)

## 3. 국가 등의 책무

- 국가는 승강기 안전 종합 시책 수립/시행
- 지자체는 관할구역 승강기 안전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/시행

## 4. 계획의 수립/시행

### 가.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

#### 1) 내용

##### a) 승강기 안전관리

- 기본목표, 추진방향
- 기술 연구/개발
- 기술인력 교육/양성

##### b)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구축/운영

##### c)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

##### d) 장관 인정 사항

2) 장관은

a) 5년마다 **수립/시행** 요

b) 사회/경제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시 변경  
가능

c) 수립/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미리  
협의 요

d)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, 지자체장에 자료  
제출 요청 가능

-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 
함

e) 수립/변경한 때  시도지사(특별시장,

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

특별자치도지사)에 통보, 관보나 홈페이지에

게시 요

## 나.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)

-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해 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수립/시행 요

### 5.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

가)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/부품 제조/수입, 설치, 유지관리시 법과 기준을 준수해 승강기 이용자 등 피해 방지 노력

나) 관리주체는 승강기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 유지되게 법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

### 6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승강기 안전에 관해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법 따름
- 다른 법률 제정/개정시 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함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#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

### 수입업

6~10조

#### 1.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

#### 등록 등

가. 승강기, 다음 부품 제조업/수입업 하려는